

# 정보공개서

(주)한길에스디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8020008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08.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1.09.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현죽		현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378				78-10	
㈜한길에스디	법인 설립등기일	1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		대표팩스번호	
(H) C 2 (II _ II	1999.01.26.		1999.02.01.	황 진 형	02-1599-6288 02-428		02-428-2097	
	법인등록번호 1	0	111-1640667	사업자등록번호		212-	-81-4120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한길에스디	현죽	경기도 광주시 초	월읍 산수로 378-10
	황진형(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특수관계인 (임원)	김선축(사내이사) 황기서(사내이사) 박영옥(감사)	황진형	1599-6288	02-428-2097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대용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 칭 현죽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현죽 Well made SMILE HAPPY FOOD 서비스표 등록번호: 4120100021042 자세한 내용은 I -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연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9,211,523	2,660,700	6,550,822	10,676,322	221,822	274,008
2022년	8,484,491	1,659,253	8,484,491	12,852,682	373,943	306,682
2023년	9,147,103	1,926,646	7,220,457	12,190,449	514,035	432,636

### 2) 연도별 가맹사업 <u>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u>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르	이름					
	VI E	기간	직위	담당 업무			
		1999.02.~현재	㈜한길에스디 대표이사	대표이사			
		2023.12	㈜한길에프씨 합병				
	황진형						
_1=1.51							
가맹사업		2014.02~2023.12	(주)한길에프씨 대표이사	 경영총괄			
관련 임원	김선숙	2014.3 ~현재	(주)한길에스디 이사	관리총괄			
	황기서	2011.11 ~2014.3	(주)한길에프씨 대리	매장관리			
		2014.3 ~현재	(주)한길에스디 이사	영업총괄			
	박영옥	2001.9 ~현재	(주)한길에스디 감사	회계/경리/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TJ	임원·	수(명)	되이스/대\
시심	상근	비상근	식원구(명)
2023년 12월 31일	2	1	16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연</b>	43 류	등록일	출원번호 4120100021042 등록번호 4102217480000	(구)안길에프씨	2021.11.24
<b>연</b>	16 류	등록일	출원번호 4020100042787 등록번호 4008948680000	(주)한길에프씨	2021.12.16
(Year) 상 전권 (사료권)	43 류	등록일	출원번호 4120030018912 등록번호 4101228070000	(주)한길에프씨	2025.10.27
<b>经</b>	16 류	등록일	출원번호 4020060062658 등록번호 4008027290000	(ㅜ)원결에드씨	2019.10.06

<sup>\*</sup>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sup>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현죽]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10년 05월 15일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현죽	현죽	김천	2003.03~2005.1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현푸드	현죽	홍석종	2005.10~2010.05	의정부시 호원동 432-7 한주프라 자 5 층
(주)한길에프씨	현죽	황진형	2010.05~2014.03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20 2 층
(주)한길에프씨	현죽	김선숙	2014.032017.0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20 2층
(주)한길에프씨	현죽	이남수	2017.05~2018.02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20 2 층
(주)한길에프씨	현죽	김선숙	2018.02~2023.1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378-10
㈜한길에스디	현죽	황진형	2023.12.~현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378-10

#### 3. [현죽] 업종

영업표지	업종			
-1.5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현죽	기타외식	죽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C	20	2021.12.31			2022.12.31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9	19	_	19	19	_	19	19	_
서울	1	1	_	1	1	_	1	1	_
부산	-	-	_	-	-	-	-	-	_
대구	_	_	_	_	_	-	_	_	_
인천	2	2	-	2	2	-	2	2	_
 광주	1	1	_	1	1	-	1	1	_
대전	-	_	_	-	_	-	-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	_	_	_
경기	8	8	-	8	8	-	8	8	_
강원	_	_	_	_	_	_	ı	_	_
충북	3	3	_	3	3	_	3	3	_
충남	2	2	_	2	2	_	2	2	_
전북	_	_	_	_	_	_	-	_	_
전남	_	_	_	_		_	_		
경북	-	_	_	_	_	-	-	_	_
 경남	2	2	_	2	2	_	2	2	_
제주	_	_	_	_	_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현죽]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9	0	_	0	0	19
2022	19	0	-	0	0	19
2023	19	0	_	0	0	19

#### 6. [현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현죽]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현죽] 가맹점사업자가 2021 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000014 114		2023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3.3 ㎡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 당	비고
전체	19	51,255						18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경기	8,	40,054						8곳 산정
강원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3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	_	_	_	5곳 미만

- \*당사는 POS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e-count)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 산정 하였습니다
- ●2010년 이후 pos를 사용하는 매장은 pos매출을 기준 ●기존매장은 현죽 맛소스와 쇼핑백 소진량과 본사에 구매하는 물류비용을 비교하여 산출함. ●객 단기는 평균 7,384원(POS발생되는 총 미출대비 판매수량기준)

- ●석 단가는 평균 7,304년(FOS) 영되는 중 배출네의 단배도 3기준) ●현죽 맛소스는 영양죽에만 사용하며, 레시피 기준 평균 2.5g 사용 매장, 고객 특성에 따라 3g~4.5g 정도까지 사용하는 경우 있음 ●매장 평균 메뉴에 대한 판매비율은 영양죽(맛소스 사용메뉴)와 전통죽/베이비죽

(맛소스 미사용)의 비율이 68%:32% 비율임을 감안함 (포스매출비율분석) ●매장이 위치한 상권에 따라 쇼핑백 소진량은 차이가 있음 ●임시 휴업매장, 교육장 겸용매장, 특수상권 매장은 매출산정에서 제외하였음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 .)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현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현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①</sup>	평균 영업기간 <sup>②</sup>
2023	19	2,678일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는 기간

#### 9.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현죽]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VAT 미포함)

78	<b>Δ</b> ΓL 717L		지출 비용			ul ¬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0	0	_	_

#### 10.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마케팅부 02-3671-7332			
피보험인(보험계약자)	㈜한길에스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사건번호 2022 고단 32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어 대표자 황진형 징역 6월, 주식회사 한길에스디는 벌금 2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현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 만원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 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550 만원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300 만원 (VAT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 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 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합계	1,300만원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550만원
보증금	200만원(VAT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일반형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기준 (약 10 평)	면적 3.3 m²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4,268	해당 없음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1,650	165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_
주방설비		935	93.5		_
집기비품	가맹본부	165	해당 없음		-
간판/사인몰		550	해당 없음		-
의자/테이블		330	해당 없음		-
인쇄홍보물외		385	해당 없음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253	해당 없음		-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가스공사, 전, -냉/난방기, 외 설치 -음향기, 전화 따른 공사 등 -식기세척기, : 소방시설, 분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공급업체 요구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220만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배달전문형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16.5 ㎡기준 (약 5 평)	면적 3.3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2,647.7	해당 없음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990	49.5		_
주방설비/집기/비품	가맹본부	880	해당 없음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_
간판/사인몰		275	해당 없음		_
의자/테이블		104.5	해당 없음		_
인쇄홍보물외		132	해당 없음		_
배달용품		200.2	해당 없음		_
배달솔루션		66	해당 없음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가스공사, 전 계단 -냉/난방기, <sup>9</sup> 설치 -음향기, 전회 특성에 따른 -식기세척기, 소방시설,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공급업체 요구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220만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나기도 사기되어 기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점포규모: 33 m²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 참고하시기 바랍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 시 당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W 참고하시기 바랍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포스	협력업체	월 33,000원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연 220만원	재계약 시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 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 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275 만원, VAT 별도),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일반형: 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550 만원, VAT 포함), 보증금(2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현죽"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 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 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 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현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현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현죽]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2) 당사가 [현죽]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메뉴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현죽]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 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별점 02 메뉴 명 및 판매가 참** 고)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 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죽전문점	현죽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kM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가맹본부가 일부 메뉴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해당 유통망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현죽]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현죽 영업표지 이미 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 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외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6)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100%	0%	0%	0%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 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100%	0%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6. 계약기간,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현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거이나 ② 다른 가맹점시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하가
-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 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 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⑬ 관 계법령의 준수
-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Q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 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 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가. 취업자결들 시장하다는 내용의 행정서는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 항영지군들 본근 영구. 나만, 합당에 단기하여 영영지군들 실금하는 파영금 등의 두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 <u>누락한 경우는 제외</u>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 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

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b>가맹계약의 기간</b> 에 따른 기간	죽전문점	국내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현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2:00 (13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sup>\*</sup>귀하가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점주 자율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현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 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_	-
	개별광고	_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브랜드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전 역	50% (전체 또는 지 역 가맹점에 안분)	광고/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ᆔᅕ	전국 및 지역별 판촉			
판촉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할인카드· 멤버십 제 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 한 월 할인금 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 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 내 부담액 송금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9.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 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 항 및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 10 만원 )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4)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해지일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기간 기준: 1 년 미만 시 2 개월분, 1 년 이상 ~2 년 미만 시 4 개월분, 2 년 이상 시 6 개월분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해지일 A: 잔여계약기간 기준: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 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 만약 당사로부터 금액 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 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 악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 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37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	14일	
가맹계약체결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 공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수령 -투자비 산출	1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2일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15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가 중 식시)	10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 멸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 표에 따는 고료기진는 그 기진에 돌이들기다 들어들 두 ᆻ답더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 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설인의객인우 ► 안이준로가통지거인현을우 되나 하고 경 변화 사여의 유럽적 장비 보적되 생의 이 나라하업을 어상에 지경 보적되 생의 이 사성기 정업 는 생의 이 사이의 하나영한 는 나라 유 의유럽적 장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 용(장비, 집기의 제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은 일 에 소요되는 단의 의 비용의 통에 가맹사업의 사업의 사업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이를 실소 사업의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공 있의 행구(공사계약서 하 등수 90일 해 등수 90일 해 등수 90일 해 가맹본자에 가맹본다 에 가맹본다 에 가맹점사업자의 보부도의 비용 기 생각 보다 이내에 가망별도의 기 등수 1년 이 등수 1년	선 3 가 책유 종해도 경부 잔비담하거급는 포로이부는 사이 되었다. 이 이 경수 포르이 보다 이 이 이 있는 지 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브		접 차	비오버다
T =	대상 및 내용	실 사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 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 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sup>①</sup>	주요 내용 <sup>②</sup>	지원조건 <sup>③</sup>	지원기간	지원내용 <sup>④</sup>	비고®
해당없음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현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10일(70시간) (저조 형이 취에 버도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개점 전)	전) 기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지정 교육장) (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5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개발 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 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 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sup>©</sup> [당 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 당 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메뉴명 및 판매가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특전복죽	20,000
성게알죽	16,000
진전복죽, 전복삼계죽	15,000
낙지삼계죽	13,000
순사골전복죽, 성게알미역죽(아기죽)	12,000
전복죽, 삼계죽	10,000
순사골낙지죽, 매생이굴죽, 잣죽	9,500
해물죽, 대게살죽, 버섯굴죽 새우야채죽(아기죽), 야채치즈죽(아기죽)	9,000
순사골쇠고기죽, 새우죽	8,500
쇠고기야채죽, 참치야채죽,낙지김치죽, 동지팥죽, 단호박죽, 녹두죽, 흑임자죽	8,000
순사골야채죽, 쇠고기미역죽, 강된장해물덮밥, 순두부해물덮밥, 스파이시해물덮밥, 불향쭈꾸미덮밥, 매콤오징어덮밥, 달콤제육덮밥	7,500
흰죽	6,000

<sup>\*</sup>상기 메뉴 명 및 판매가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 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별첨3. 재무자료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빈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 수령했	3개서/인근 [ <b>습니다</b> ."리	<b>가맹점</b> 고 작성	<b>현황 문</b> 해주세:	<b>서/가맹계약서</b> <sup>요</sup> .	를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서울 □ □ 충북 □	인천 충남	□ 경기 □ 세종	□ 부산 □ 전북	<광역지병 □ 대구 □ 전남	망자치단체 □ 광주 □ 경북	> □ 대전 □ 경남	□ 울신 □ 제주	난 □ 강원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1 년 월 일

> > 가맹본부 (주)한길에스디 (인)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	보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 수령했	공개서/인근  습니다." <sup>리</sup>	<b>가맹점</b> h고 작성	<b>현황 문</b> 해주세 <u>9</u>	서/가맹계약서를 <sup>요</sup>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서울 □ □ 충북 □	□ 인천 □ 충남	□ 경기 □ 세종	□ 부산 □ 전북	<광역시망 □ 대구 □ 전남	 □ 광주	□ 대전	□ 울산 □ 제주	□ 강원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한길에스디 (인)